2015년 2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월 9일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• 신상곤 과장(042-481-4505) • 백승표 사무관(042-481-4553)
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대폭 확대

- '14.3월 벤처·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' 후속 조치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「**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(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, '14.3월)**」의 **후속조치**로 **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**하는 내용을 담은 **'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'이 개정**('15.2.3 공포)되었다고 밝혔다.

○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**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**(원칙허용·예외금지)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

*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규정 : (기존) 원칙금지·예외허용(포지티브 방식) → (개정) **원칙허용·예외금지**(네거티브 방식)

○ **"창의성" 및 "전문성"이 발현되는 분야**를 **대폭 확대하여** 1인 창조기업의 **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,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**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.

□ **1인 창조기업**이란 "창의적인 아이디어, 기술·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(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)"으로, 현재 그 적용범위는 **지식서비스업*, 제조업** 위주로 한정**되어 있으나,

*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58~63),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0~73), 사업지원 서비스업(75), 온라인 교육학원(85504)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85659), 창작·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)

** 식료품, 음료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등 (중분류 14개 업종)

○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**산업간·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**되고 **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**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, **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**해졌다.

*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: **비즈니스센터**(사무공간 제공, 세무·법률·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등), **사업화 지원**(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), **오픈마켓**(11번가, 홈&쇼핑, 우체국쇼핑, 네이버) **입점지원**, **1인 창조기업 전용 R&D 등**

□ 한편, **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**에 대해서는 **시행령에서 규정**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**금년 8월초부터 시행**할 예정이다.

□ **중기청 연구용역** 결과에 따르면 **교육서비스업(85), 수리업(95)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**된다.

* 지원대상(연구용역) : (기존) 434개 업종, 77천개 → (개정) 600여개 업종, 222천여개
(업종 :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, 사업체 : '12년 전국사업체조사)

* 지원대상 업종 선정 기준(연구용역) : 창조기업의 특성(R&D 비율, 지재권 활용 및 개발수 등), 국민경제 기여도(부가가치 유발계수, 전후방 연쇄효과) 등

○ 특히, **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(컴퓨터 프로그래밍 등) 분야와의 융·복합**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,

○ 또한 **경기침체 등**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(구두, 가구, 의류 등 리폼샵)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다만,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**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**하기 위하여,

○ 지원사업 선정시 **1인 창조기업에 대한 "창의성"과 "전문성"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**을 명확히 하도록 **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**해 나갈 예정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승표 사무관(☎ 042-481-45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